

군산시 공고 제2014-15호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07. 5. 25)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사용 확대
-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해 줌으로서 양지역간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장사시설 소재지 변경

1) 용어변경 : 납골⇒봉안, 납골묘⇒봉안묘, 납골당⇒봉안당,

화장장⇒화장시설 등

2) 소재지 변경

▶ 오식도공원묘지(오식도동 산60 ⇒ 503-2)

▶ 승화원(임피면 보석리 산19-1 ⇒ 401-5)

나. 군산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 확대

1)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증가에 따른 운영 과정상 미비점 개선·보완

2) 군산시 화장시설 및 봉안당 군산시민 적용 사용 명확화

다. 서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 요금 적용

1)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 요금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T.063-454-7951, F.063-453-405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강창완

(063-454-7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중 “화장장” 을 “화장시설” 이라 하고,

제2조제4호중 “납골시설” 을 “봉안시설” 이라 하고,

“ “납골당” “납골탑” “납골묘” ” 를 “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 ” 라 한다.

제2조제5호중 “납골당” 을 “봉안당” 으로, “납골시설” 을 “봉안시설” 로, “납골탑” 을 “봉안탑” 으로, “납골묘” 를 “봉안묘” 로, “납골당 및 납골탑” 을 “봉안당 및 봉안탑” 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연장”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2항중 “ 산 60번지” 를 “503-2번지” 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공설화장장” 을 “공설화장시설” 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중 “화장장” 을 “화장시설” 이라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산 19-1번지” 를 “401-5번지” 로 한다.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5장의 제목 “공설납골당” 을 “공설봉안당”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군산시에 거주하는 군산시민” 을 “군산시에 거주하는 군산시민 및 외국인”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산19-1, 잡종지452-23번지” 를 “401-4, 452-23번지” 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납골” 을 “봉안” 으로 한다.

제28조 제목중 “납골대장” 을 “봉안대장” 으로 하고, 제28조중 “납골” 을 “봉안” 으로 각각 한다.

제6장 제목 “사설납골시설” 을 “사설봉안시설” 로 한다.

제31조중 “사설납골시설” 을 “사설봉안시설” 이라 하고,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을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으로 한다.

제32조중 “납골” 을 “봉안” 으로 한다.

제33조중 “납골” 을 “봉안” 으로 한다.

[별표2] 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u>	제명 : <u>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u>
<p>제2조(정의) 1·2(생략)</p> <p>3.“<u>화장장</u>”이라 함은 사체, 유골, 태반(사산오물), 적출물등을 화장하는 시설을 말한다.</p> <p>4.“<u>납골시설</u>”이라 함은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u>납골당</u>” “<u>납골탑</u>” “<u>납골묘</u>”로 구별한다.</p> <p>5.“<u>납골당</u>”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써의 <u>납골시설</u>을 말하며, “<u>납골탑</u>”은 탑의 형태로 된 <u>납골시설</u>을 말하고, “<u>납골묘</u>”라함은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u>납골당</u> 및 <u>납골탑</u>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p> <p>6. <신설></p> <p>제9조(명칭 및 위치)①(생략)</p> <p>②공원묘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6, 22, 23, 24,전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산 60번지</p>	<p>제2조(정의) 1·2(현행과 같음)</p> <p>3.“<u>화장시설</u>”----- ----- -----.</p> <p>4.“<u>봉안시설</u>”----- ----- ----- -----“<u>봉안당</u>” “<u>봉안탑</u>” “<u>봉안묘</u>”-----.</p> <p>5.“<u>봉안당</u>”----- ----- <u>봉안시설</u>-----, “<u>봉안탑</u>”----- ----- <u>봉안시설</u> -----, “<u>봉안묘</u>”----- ----- <u>봉안당</u> 및 <u>봉안탑</u> -----.</p> <p>6.“<u>자연장</u>”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9조(명칭 및 위치)①(현행과같음)</p> <p>②----- -----, -----, ----- <u>503-2번지</u></p>

현 행	개 정 안
<p>에 둔다.</p> <p>제4장 공설화장장</p> <p>제18조(명칭 및 위치)①군산시화장장의 명칭은 군산시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p> <p>②승화원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9-1번지에 둔다.</p> <p>제20조(사용료)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5장 공설납골당</p> <p>제23조(명칭 및 위치)①납골당의 명칭은 군산시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이라 한다.</p> <p>②추모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9-1, 잡종지452-23번지에 둔다.</p> <p>제25조(봉안기간)①(생략)</p> <p>②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유연고 유골은 사망자의 성명과 납골 일련번호를, 무연고 유골은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한 묘지번호를 명기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p>	<p>-----.</p> <p>제4장 공설화장시설</p> <p>제18조(명칭 및 위치)①-----화장시설-----</p> <p>-----.</p> <p>②-----</p> <p>----- 401-5-----.</p> <p>제20조(사용료)-----</p> <p>-----.</p> <p>다만,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p> <p>제5장 공설봉안당</p> <p>제23조(명칭 및 위치)①봉안당-----</p> <p>-----.</p> <p>②-----</p> <p>----- 401-4, 452-23-----</p> <p>-----.</p> <p>제25조(봉안기간)①(현행과 같음)</p> <p>②-----</p> <p>----- 봉안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추모관의 사용)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은 <u>군산시에 거주하는 군산시민과 본적이 군산시인 사망자의 유골과 군산시에 매장되었다가 화장한 유골에 한한다.</u></p>	<p>제26조(추모관의 사용)①~②(현행과 같음) ③----- -----<u>군산시민 및 외국인</u>과----- ----- -----.</p>
<p>제28조(납골대장 등의 비치)추모관 <u>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추모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납골사항 및 유골 인도·인수 사항등을 기재한 납골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28조(봉안대장 등의 비치)----- ----- -----, <u>봉안</u>----- ----- ----- <u>봉안</u>----- -----.</p>
<p>제6장 사설납골시설</p>	<p>제6장 사설봉안시설</p>
<p>제31조(구분)“사설납골시설”이라함은 개인, 가족, 문중·종중, 법인등에서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u>납골당, 납골묘, 납골탑등과 같은 시설물을 말한다.</u></p>	<p>제31조(구분)-----봉안----- ----- ----- -----<u>봉안당, 봉안묘, 봉안탑</u>-----.</p>
<p>제32조(설치)납골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제32조(설치)봉안----- -----.</p>
<p>제33조(안치유골)납골시설에 안치하기 위한 사체 및 유골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화장하여야 한다.</p>	<p>제33조(안치유골)봉안----- ----- -----, -----,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승화원사용요금(20조관련)

[별표2] 승화원사용요금(20조관련)

기 준	구 분	금 액 (원)			비고
		관내 (군산시)	관 외 (도내)	(도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표] (현행과 같음)

※다만, 서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에 한하여 도내요금을 적용한다.

※ <삭제>

군산시공고 제 2014-16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1. 관계법령**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1102호(2013년 7월 26일)

2. 제정의 필요성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운용함에 있음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 실질적인 복지소외계층이 포함되도록 지원대상자 범위 규정(제2조)
- 예산 범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규정(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T.063-454-3084, F.063-453-30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전영길 (063-454-30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안)

(제정) 2014. . 규칙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지원대상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0%이하이고,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하는 중소도시 재산범위특례 이하의 재산가액을 보유한 자.
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다음 각목의 경우
 - (1)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2)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
 - (3)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 (4)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구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 (6)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 (7)위의 각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내 금융자산 초과자중 과다채무로 부채를 공제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②조례 제3조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아래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자는 소득, 재산 및 금융 재산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 중인 시설.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긴급구호비

- (1) 생계비: 주소득원의 장기 실직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자 중 1인~2인가구 200천원, 3인 이상 가구 300천원 범위 내.
- (2) 의료비: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월간 본인부담진료비 및 의료비 관련 비용이 100천원이상 발생될 경우 300천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

2.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

- (1)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고지서 납입 금액 중 300천원 범위 내에서 납입고지 금액.
- (2) 교복비: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 300천원 범위 내.
- (3) 수학여행비: 초·중·고 재학생 중 초등 100천원, 중등 200천원, 고등학교 300천원 범위 내.
- (4) 검정고시 등록금: 검정고시 등록 고지서 납입금액중 300천원 범위내 납입고지 금액
- (5) 학원수강료: 초·중·고재학생 중 예·체능 등 특기적성과목 및 교과 학습과목 중 1과목에 한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료 게시 금액 중 학생의 본인부담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의 금액을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한다.
- (6) 대안교육비: 중·고재학생 중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임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한다.

3.공공요금: 수도, 가스, 전기, 건보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300천원 범위 내에서 체납 고지 금액.

4.월동대책비: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중 동절기(12월,1월,2월) 재택 보호가 요구되는 가구로 300천원 범위 내.

5.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 가구 등 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300천원, 개인 100천원 범위 내.

6.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대한 검사비,약값,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 요양급여, 임대보증금, 체납 월세, 주거 환경개선 등 주거 수선, 장례비용, 조산 및 분만 후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300천원 범위 내.

(2)지원금은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의신청) ①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명절위문금·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및통지) 시장은 지원신청대상자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 사항 및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지원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과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서

- 조사일시 : 2013. . . .
- 조사내용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보호구분		소 득	
주거실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가 족 사 망	관 계	성 명	연 령	건강상태	직 업
조 사 자 의 견					

2013. . . .

조사자 사회복지 급 (인)

확인자 읍 면 동 장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월 1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군산시 비응도동 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나. 명 칭 : 공장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조성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도 로	소로2-979	L=30m, B=8m	L=30m, B=8m	
녹 지	완충녹지 34	240m ²	240m ²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비응도동 30-1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홍보에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3. 7. 26 ~ 2013. 12. 31.
 변경 2013. 7. 26 ~ 2014.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비응도동	30-1	공장	11,994.7	240	홍보에너지	군산시 비응도동30-1			
2	”	32	공원	7,615.3	240	군산시				

군산시 고시 제2014-8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시도배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수도과 454-539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월 1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시도배수지)사업
 - 나. 명 칭 : 신시도 배수지 신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면적(m ²)	실시계획인가면적(m ²)	비고
수도공급설비	신시도배수지	12,100	12,100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수도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1. 10 ~ 201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	임	12,100	12,100	국 (산림청)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4 - 9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6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 -49호

개정면 운회리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개정면 운회리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0.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편입토지내역	사업시행자
개정면 운회리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587 ~ 587-17번지 간	L= 0.57km B= 6.0m	개정면 운회리 587 등 16필지	군산시장

2. 보상대상 : 개정면 운회리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일체
(보상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3.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2013. 2월 이후부터 보상협의를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 ①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②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요구코자 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수 있음.
- ③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및 가압류)는 소유자 본인이 설정해지 후 계약체결)

- 6. 열람기간 : 2014. 1. 10 ~ 1. 24일
- 7.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063-454-3603)
- 8. 기타사항 :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편입토지 물건조사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		
1	개정	운회	587	답	10,748	691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아파트 105동 1106호	박열				
2	개정	운회	591-3	답	2,296	251	군산시 개정면 총량1길 4	김정민				
3	개정	운회	631-1	답	3,715	250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518-2	이진숙	근저당권자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협협종조합	
4	개정	운회	631-5	답	4,207	11	군산시 옥석신기길 73	박경덕				
5	개정	운회	631-8	답	3,653	46	군산시 나운동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601	이중홍				
6	개정	운회	631-9	답	3,656	56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560-4	채예순	근저당권자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협협종조합	
7	개정	운회	631-10	답	3,660	61	군산시 나운동 156-2 신일아파트 105동 503호	김춘호				
8	개정	운회	631-11	답	3,663	59	군산시 삼학동 788-25	이연호				
9	개정	운회	631-12	답	3,497	2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09-1	이규호				
10	개정	운회	631-15	답	1,842	6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26-72	장영호				
11	개정	운회	631-16	답	2,602	59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13-4	이옥녀				
12	개정	운회	631-17	답	3,320	59	군산시 개정면 대왕4길 3-2	이정원	근저당권자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13	개정	운회	631-25	답	1,812	4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45-1 현대에코르@ 101동 1605호	김해자	근저당권자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협협종조합	
14	개정	운회	631-48	답	355	56	군산시 경암동 572-128	김영호				
15	개정	운회	631-50	답	1,090	61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76	박형진				
16	개정	운회	631-58	답	3,967	38	군산시 소룡동 755 신도시@101동 803호	김성규				
17	개정	운회	870	구	1,664	410		국(농수산부)				
18	개정	운회	631-47	철	590	4		국(국토교통부)				
19	개정	운회	631-46	철	169	26		국(국토교통부)				
20	개정	운회	870-2	구	192	98		국(농수산부)				
21	개정	운회	870-1	구	1,010	954		국(농수산부)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22	개정	윤희	870	구	1,664	410		국(농수 산부)				
23	개정	윤희	631-47	철	590	4		국(국토 교통부)				
24	개정	윤희	631-46	철	169	26		국(국토 교통부)				
25	개정	윤희	870-2	구	192	98		국(농수 산부)				
26	개정	윤희	870-1	구	1,010	954		국(농수 산부)				
27	개정	윤희	587-1	구	35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 어촌공 사				
28	개정	윤희	953	도	3,270	30		국(농수 산부)				

군산시 공고 2014 - 51호

개정면 발산리 아산마을 농로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개정면 발산리 아산마을 농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0.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편입토지내역	사업시행자
개정면 발산리 아산마을 농로개설공사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268-5 ~ 265-6번지 간	L= 0.196km B= 6.0m	개정면 발산리 264-1 등 9필지	군산시장

2. 보상대상 : 개정면 운회리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일체
(보상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3.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3. 2월 이후부터 보상협의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 ①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②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요구코자 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수 있음.
- ③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는 소유자 본인이 설정해지 후 계약체결)

- 6. 열람기간 : 2014. 1. 10 ~ 1. 24
- 7.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063-454-3603)
- 8. 기타사항 :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편입토지 물건조서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개정	발산	264-1	답	714	38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2-178	채규왕	근저당권자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131-13	개정농업협동조합	
2	개정	발산	264-2	전	1,527	9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2-178	채규왕	근저당권자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131-13	개정농업협동조합	
3	개정	발산	265-2	답	2,172	173	군산시 소룡동 828-3 다세대주택 나동 202호	김용식	근저당권자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4-10 302호	김태균	
4	개정	발산	265-3	답	4,545	214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305-1	채진	근저당권자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131-13	개정농업협동조합	
5	개정	발산	265-4	답	2,608	146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361	이길구				
6	개정	발산	265-6	답	6,464	228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361	이길구				
7	개정	발산	266	답	2,522	78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차 주공아파트 304동 901호	김형철				
8	개정	발산	267	답	3,081	37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차 주공아파트 304동 901호	김형철				
9	개정	발산	268-5	답	2,860	130	군산시 문화동 910-10	문영래				

군산시 공고 제2014 - 65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일

군산시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계획 : 40호
- 대상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 ◆ 도조례 시행(2010. 12. 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기간
 - ◆ 최대 6년(1회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 지원방법 :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신청접수: 2014. 1월~12월중(연중)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면적 (평)	14㎡ (4.2)	26㎡ (7.8)	36㎡ (10.8)	43㎡ (13.0)	46㎡ (13.9)	55㎡ (16.6)

② 장애인 가구

-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③ 다자녀 가구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 신청서류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 ◆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 공문 또는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 발송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 ◆ 건축과(☎454-3734)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m²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희망주택 유형

- 장기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 평형 : m²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 조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인감증명서, 인감도장,신분증
2.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3.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군산시 공고 제2014 - 73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5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 15.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 15.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4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기획예산과	군산시통합관리 기금운용관인		플라스틱	군산시통합 관리기금 운용 및 시금고 계좌 개설
기획예산과	군산시통합관리 기금출납원인		플라스틱	군산시통합 관리기금 운용 및 시금고 계좌 개설
민원봉사과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특수고무 (우레탄)	인증기 신규 구입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민원봉사과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특수고무 (우레탄)	인증기 신규 구입

4. 폐기공인 및 인영(3점)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민원봉사과	군산시장의인 어디서나민원사무전용		황동	인증기 교체
민원봉사과	군산시장의인민원사무전용		청동	인증기 노후화 교체
민원봉사과	군산시장의인민원사무전용		신주	2012년 인증기 교체분 폐기